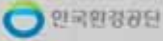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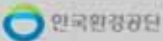


## 발표 순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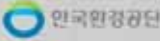
- I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- II 석면피해구제 업무절차
- III 석면피해인정 기준 및 구비서류
- IV 특별유족인정기준 및 구비서류
- V 구제급여 지급신청

### I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

#### 1. 조문구성

- 법 : 54조로 구성(부칙 2개조)
- 시행령 : 46조로 구성(부칙 2개조)
- 시행규칙 : 40조로 구성(부칙 3개조)
- (목적)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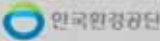
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 

2. 석면질병의 정의(법 제2조)

-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(原發性) 악성종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함

3. 적용범위(법 제3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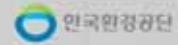
- 아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함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공무원연금법, 군인연금법, 선원법,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,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

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 

4. 구제급여의 종류(법 제5조)

- (요양급여) 석면질병 치료·검사비용(본인부담 의료비)
- (요양생활수당) 요양 및 생활비용(월정액)
- (장의비) 석면질병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
- (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) 법 시행 전, 석면피해인정 판정 전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지급
- (구제급여조정금) 특별유족조위금 - (기 지급 요양급여+요양생활수당)

## 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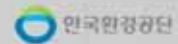
### 5. 석면피해인정 신청(법 제6조)

- 석면질병 종류별 석면피해인정기준
  -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
  - \*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의 조직병리학적 검사서류 또는 폐기능 장애검사 서류는 상급종합병원, 국립대약병원 등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
- 신청서식, 구비서류 등 : 시행규칙에 규정

### 6.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(법 제7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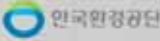
- 유효기간
  - 원발성 악성중피종 · 원발성 폐암 : 5년
  - 석면폐증 : 나올 때 까지
- 유효기간 갱신 신청 :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올 가망이 없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유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한국환경공단에 갱신 신청
- 유효기간 갱신 :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정

## 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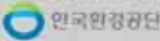
### 7.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구성 · 운영(법 제8조)

-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역할
  - 석면피해인정
  -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
  - 특별유족인정 여부 심의 등
- (구성)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석면질병 분야 전문의 5명 이상 포함
- (의결방법)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전원의 압의로 의결

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 

### 8. 요양급여(법 제9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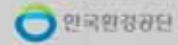
- 지급액
  - 원발성 악성종피종 · 원발성 폐암 :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 전액.  
다만,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시행령에 따른  
연간 본인부담 상한액(지역별 200~400만원)을 초과할 수 없음
  - 석면폐증 : 정기 건강검진 실시(비용 : 기금부담)
- 신청 가능기한 : 신청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

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 

### 9. 요양생활수당(법 제10조)

- 원발성 악성종피종 · 원발성 폐암
  - 매월 지급액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 
최저생계비(지급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)의 100분의 100에 해당  
하는 금액
    - ※ 2011년 2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: 906,830원/월
- 신청 가능기한 : 신청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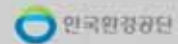
## 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

### 9. 요양생활수당(법 제10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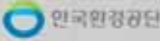
- 석면폐증 피인정자 지급액
  - 제 1급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(지급신청 당시 기준)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 (약 653천원)
  - 제 2급 : 100분의 48에 해당하는 금액(약 435천원)
  - 제 3급 :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(약 218천원)
- ※ 석면폐증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은 24개월 동안 지급

## 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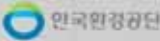
### 10. 장의비(법 제11조)

- 지급액
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(지급신청 당시 기준)의 100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
  - ※ 약 2,059천원(석면질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)
- 지급대상 :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피인정자의 장제를 지낸 유족
- 신청기한 :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

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 

**11.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 장의비(법 제12조)**

- 지급액
  - 원발성 악성종피종·원발성 폐암 : 장의비의 100분의 1,500에 해당하는 금액(약 30,878천원)
  - 석면폐중(제1급) : 장의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(약 15,439천원)
  - 석면폐중(제2급) :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(약 10,293천원)
  - 석면폐중(제3급) :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(약 5,146천원)
- 신청기한 : 법 시행일/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

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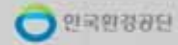
**11.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 장의비(법 제12조)**

- 특별장의비 지급액
  - 장의비 지급액과 같음(2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%)
  - ※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하되 년 1회 지급

**12. 특별유족인정 신청(법 제14조)**

- 특별유족인정기준 : 시행령 별표3
- 특별유족인정신청서 제출 및 특별유족조위금·특별장의비 신청 :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
- ※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및 특별유족조위금·특별장의비 외 구제급여 지급신청 서류는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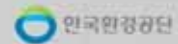
## 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

### 13. 구제급여 조정금(법 제15조)

- 지급액
  - 특별유족조위금 - (기 지급 요양급여+요양생활수당)
  - ※ 기 지급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미지급
- 지급대상 : 피인정자가 석면질환으로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
- 신청기한 :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

## 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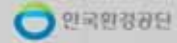


### 14. 구제급여의 부담(법 제17조)

- 지급액
  - 특별유족조위금 - (기 지급 요양급여+요양생활수당)
  - ※ 기 지급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미지급
- 지급대상 : 피인정자가 석면질환으로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
- 신청기한 :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
- 부담비율
  - 석면피해구제기금 : 구제급여액의 90%
  -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 : 구제급여액의 10%
-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 부담
  -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



## Ⅰ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

### 15. 미지급 구제급여 등(법 제18조)

- 지급액 :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된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
- 지급대상 :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
- 신청기한 :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

### 16.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(법 제19조)

- 지급제한 대상 구제급여 : 요양급여, 요양생활수당
- 지급 제한할 수 있는 경우 :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지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
- 지급제한 조치 기관 : 한국환경공단

## Ⅰ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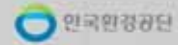
### 17.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(법 제20조)

-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
- ※ 동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석면피해인정 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

### 18. 부당이득의 징수(법 제21조)

- 부당이득
  -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
    - ※ 위 경우에는 급여액의 2배
  - 그 밖에 잘 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
- 징수금 납입 : 석면피해구제기금
  - ※ 징수금 중 지자체분(급여액의 10%)은 해당 지자체에 지급

## 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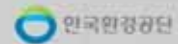
### 19. 수급권의 보호(법 제22조)

-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

### 20. 공과금면제(법 제23조)

-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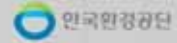
## 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

### 21. 석면피해구제기금(법 제24조)

- 기금 재원
  - 석면피해구제분담금, 가산금 및 그 밖의 이법에 따른 징수금, 부당이득의 징수금, 기금운용 수익금, 적립금,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,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,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등
- 기금 의 용도
  -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,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, 운영경비 등을 위한 한국환경공단 출연,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, 기금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, 석면피해예방 사업 등

## 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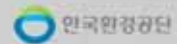
### 22.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관련

- 석면피해구제분담금(법 제31조)
  - 분담금 납부대상자, 분담금 납부임무 면제 등 명시
-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정(법 제32조)
- 석면피해구제 특별분담금(법 제33조)

### 23. 심사청구의 제기(법 제35조)
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가능
  -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,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, 구제금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, 부당이득의 징수금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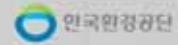
## 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

### 24.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(법 제36조)

- (설치장소) 한국환경공단
- (구성) 변호사, 교수, 전문의 등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~15명으로 구성(임기 2년, 연임 가능)
  - 전체 위원수 중 전문의를 과반수 이상 포함
- (의결방법)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  - 전문의 2명 이상 출석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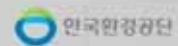
## 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

### 25.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(법 제39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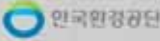
- (설치장소) 환경부
- (구성) 3급 이상 공무원, 변호사, 전문의 등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~15명으로 구성(임기 2년, 연임 가능)
- (의결방법)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  - 전문의 2명 이상 출석필요

## 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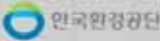
### 26. 건강피해조사(법 제44조)

- (목적) 석면피해인정 여부 진찰·검사
- (대상자) 과거 석면광산·공장,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주변지역 거주자
- (조사절차)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
  - 서류제출 : 신청자→시군구→환경부
  - 검사 : 환경부(요청)→석면피해신고센터
  - 검사결과 통보 : 환경부→신청자, 지자체
  - ※ 필요시 석면피해인정 신청 안내 또는 건강관리수첩 발급 등
- (비용부담) 검사 신청자 부담

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 

### 27. 건강영향조사(법 제47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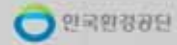
- (목적)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
- (대상자) 과거 석면광산, 석면공장,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주변지역 거주자
- (조사절차) 환경부,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, 조사 ※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석면피해인정 신청 안내 또는 건강관리수첩 발급 등
- (비용부담) 석면피해구제기금 또는 지자체 부담
  - ※ 지자체장이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, 대상자, 사유 및 비용 등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함

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 

### 28. 석면피해신고센터(법 제47조)

- 지정 가능한 대상 의료기관(현재 전국 58개소)
  - 근로복지공단이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전문요양기관, 「환경보건법」에 따른 석면관련 환경보건센터, 서울대학교 병원,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대학병원, 「의료법」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등
  - ※ 시·도별 1개소 이상 지정예정이며, 2~5개소를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 확대지정 방안 검토, 추진
-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역할
  - 건강피해조사(진찰·검사), 건강영향조사, 건강관리수첩 교부대행 및 정기 건강검진 실시, 석면질환관련 연구·조사, 석면질환의 조직병리학 적 검사 등
- 사업예산 지원
  - 매년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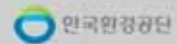
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

29. 석면건강관리수첩(법 제48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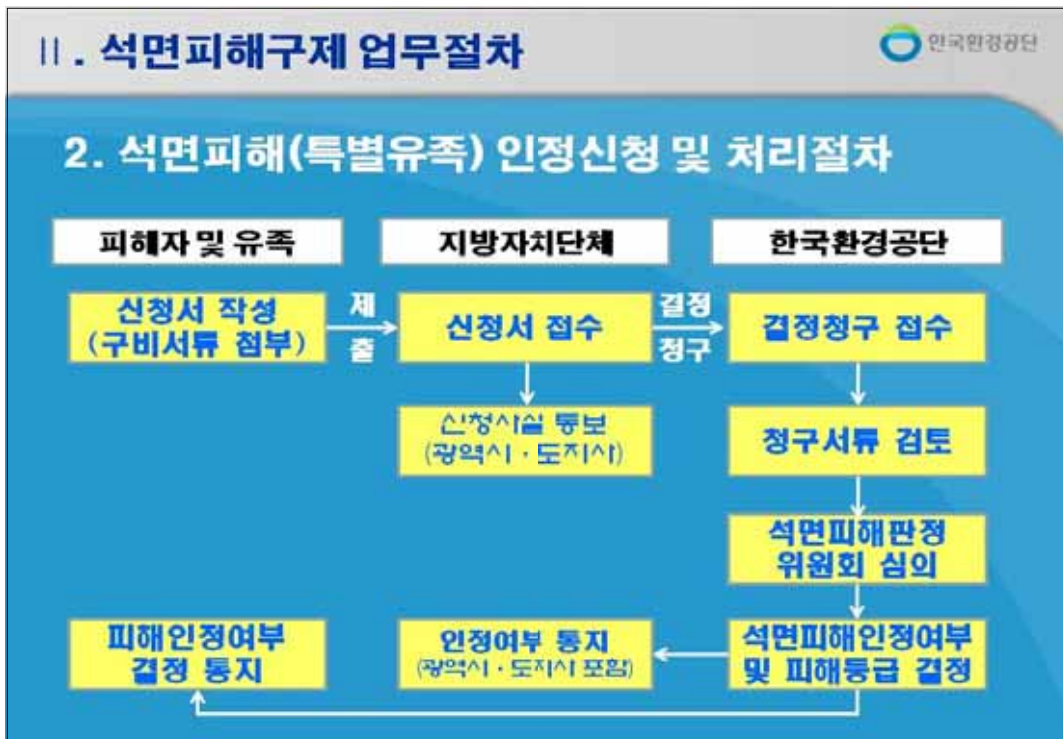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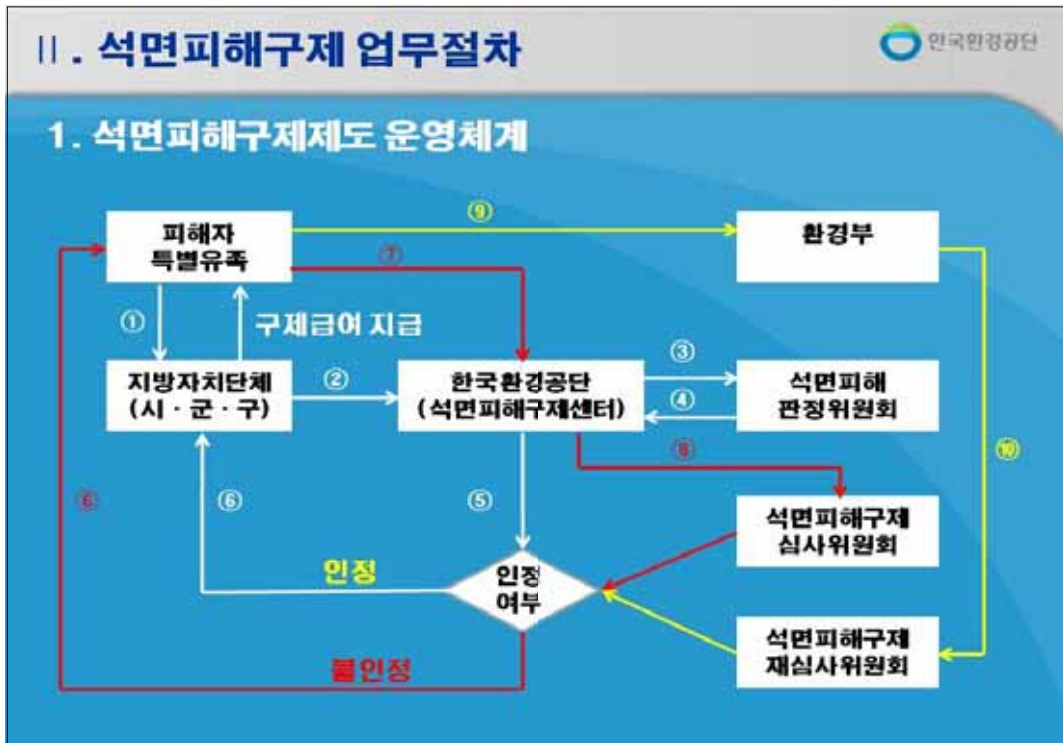
- 교부대상자
  - 석면폐증 발병이 의심되는 자
  -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건강검진 시기 :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의가 정함
- 건강검진 내용 : 진찰 · 검사, 약제 · 치료 재료의 지급, 처치 · 수술 기타의 치료
  - ※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양급여

1.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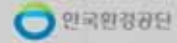


30.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· 징수 위탁비용 지급(법 제51조)

- 부과 · 징수 위탁기관
  -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
- 위탁비용 지급
  - 매년 분담금 산정액의 3% 금액 내에서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
  - ※ 다만, 2011년도는 5% 내에서, 2012년도에는 4% 내에서 지급 가능



## II. 석면피해구제 업무절차



### 3. 구제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



## III. 석면피해인정기준 및 구비서류



### □ 석면피해인정 신청

#### 신청대상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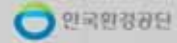
-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

#### 신청대상 질병

- ① 원발성 악성중피종
  - ② 원발성 폐암
  - ③ 석면폐증 1급 ~ 3급
- ※ 석면폐증 신청자는 피해등급을 표기
- 석면폐증의 등급은 석면폐증 병형 진행 및 폐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결정



### III. 석면피해인정기준 및 구비서류



#### ▣ 석면피해인정기준(시행령 별표1)

##### 원발성 악성종피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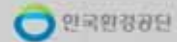
다음 **1 및 2의 어느 하나**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

1.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성종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
2.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종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(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)

※ 구비서류

- ① 진단서
- ② 조직병리 검사보고서

### III. 석면피해인정기준 및 구비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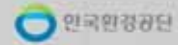


##### 원발성 폐암

다음 **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**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,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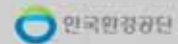
1. 다음 **1) 및 2)의 어느 하나**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
  - 1) 조직병리학적 검사
  - 2)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(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)
2.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 **1)부터 3)까지의 어느 하나**에 해당하는 경우

### III. 석면피해인정기준 및 구비서류



- 1) 석면폐증의 병명판정기준에 따른 병명이 진행형 또는 조기형인 경우
- 2)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
- 3) 다음 가)부터 나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가)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,000개 이상 있는 경우
  - 나)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$\mu$ m 이상인 석면섬유가 5,000,000개 이상 있는 경우
  - 다)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$\mu$ m 이상인 석면섬유가 2,000,000개 이상 있는 경우
  - 라) 기관지 폐포 세정액 1ml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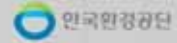
### III. 석면피해인정기준 및 구비서류



#### ※ 구비서류

- ① 진단서
    -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에 따른 진단을 우선 적용
  - ② 조직병리 검사보고서
  - ③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사진(CD파일)
    - 또는 석면소체 및 석면섬유 검사자료(건조폐 1g 당)
    -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: 석면폐증의 병형(진행형 또는 조기형) 확인 또는 석면이 원인이 된 흉막반 유무 확인
    - 석면섬유 및 석면소체 검사자료
- ※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판독결과 석면폐증 이나 흉막반 등이 없는 경우 석면 노출과 발병 간 인과관계 확인

### III. 석면폐증 인정기준 및 구비서류



#### ※ 석면폐증 등급별 인정기준

##### - 석면폐증 1급

- 석면폐증 병형(진행형 또는 조기형) + 폐기능 장애단계(고도장애)
- 석면폐증 병형(진행형) + 폐기능 장애단계(경도장애)

##### - 석면폐증 2급

- 석면폐증 병형(진행형) + 폐기능 장애단계(정상)
- 석면폐증 병형(조기형) + 폐기능 장애단계(경도)

##### - 석면폐증 3급 : 석면폐증 병형(조기형) + 폐기능 장애단계(정상)

#### ※ 석면폐증(1~3급) 구비서류

##### ①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사진(CD파일)

- 석면폐증의 병형 확인 : 의심형, 조기형, 진행형

##### ② 폐기능 장애검사서(폐용적 그래프포함)

- 폐기능 장애정도 확인 : 정상, 경도장애, 고도장애

### III. 석면폐증 인정기준 및 구비서류



#### □ 석면폐증 병형판정

##### 의심형

다음 1부터 3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. 조기 소견 중 가슴막 밑 혼탁 소견이 있는 경우
2. 소엽 내 육인 소엽 간 간질비후의 소견이 중폐야 또는 하폐야에서 좌우 폐절편의 각각의 합이 4절편 미만에서 관찰되는 경우
3. 폐섬유화 소견은 있으나 다른 질환에 의한 것과 구별이 안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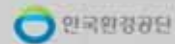


**초기형**

석면에 의한 폐섬유화 소견이 다음 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. 폐섬유화 소견이 중폐야 도는 하폐야에서 좌우 폐절편 각각의 합이 4절편 이상에서 관찰되는 경우
2. 가슴막 밑 곡선음성이나 폐실질밴드가 보이면서 조기 폐섬유화 소견이 좌우 폐절편 각각의 합이 4절편 미만에서 관찰되는 경우
3. 폐섬유화 소견이 1개 폐야에서 침범정도가 외측의 2/3 미만인 경우
4. 폐섬유화 소견이 2개 이상의 폐야에서 침범정도가 각각 외측의 1/3미만인 경우
5. 벌집모양 음영이 1개 폐야에서 침범정도가 외측의 1/3 미만인 경우

**III. 석면피해인정기준 및 구비서류**



**진행형**

석면에 의한 폐섬유화 소견이 다음 1부터 3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. 폐섬유화 소견이 1개 이상의 폐야에서 침범정도가 외측의 2/3이상인 경우
2. 폐섬유화 소견이 2개 이상의 폐야에서 침범정도가 각각 외측의 1/3이상인 경우
3. 벌집모양 음영이 1개 이상의 폐야에서 침범정도가 외측의 1/3이상인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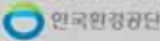
### III. 석면피해인정기준 및 구비서류



#### ▣ 폐기능 장애의 판정기준

폐기능 장애단계	노력성 폐말량	1조량 (1조량/노력성폐말량이 70미만인 경우)	폐확산능
정상	정상예측지의 80%이상	정상 예측지의 80%이상	정상 예측지의 75%이상
경도장애	정상예측지의 50%이상 80미만	정상 예측지의 45%이상 80%미만	정상 예측지의 45%이상 75%미만
고도장애	정상예측지의 50% 미만	정상 예측지의 45%미만	정상 예측지의 45%이상

### IV. 특별유족인정기준 및 구비서류



#### ▣ 특별유족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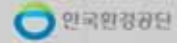
#### 신청대상자

-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법 시행일 전·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

※ 신청기한

구분	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시점에 따라	
	법 시행일 전 ( ~ 2010.12.31)	법 시행일 후 (2011.1.1~)
신청기한	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	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

## IV. 특별유족인정기준 및 구비서류



### ▣ 특별유족인정기준(시행령 별표3)

#### 원발성 악성종피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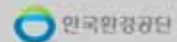
사망한 사람이 다음 **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**하는 경우

1.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 종피종인 경우
2. 원발성 악성종피종에 대한 "석면피해인정기준" 을 충족하는 경우

#### ※ 구비서류

- 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
- ② 진단서
- ③ 조직병리 검사보고서

## IV. 특별유족인정기준 및 구비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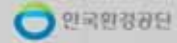


#### 원발성 폐암

사망한 사람이 다음 **1 및 3의 요건을 모두 충족**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,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

1.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인 경우
2. 다음 **1) 및 2)의 어느 하나**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
  - 1) 조직병리학적 검사
  - 2) 임상적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(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)

## IV. 특별유족인정기준 및 구비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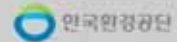


### 3. 진료·진단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다음

**1)부터 3)까지의 어느 하나**에 해당하는 경우

- 1) 석면폐증의 병명이 진행형 또는 조기형인 경우
- 2) 석면이 원인인 흉막반이 있는 경우
- 3) 다음 **가)부터 라)까지의 어느 하나**에 해당하는 경우
  - 가)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,000개 이상 있는 경우
  - 나)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$\mu$ m 이상인 석면섬유가 5,000,000개 이상 있는 경우
  - 다)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$\mu$ m 이상인 석면섬유가 2,000,000개 이상 있는 경우
  - 라) 기관지 폐포 세정액 1ml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

## IV. 특별유족인정기준 및 구비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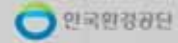


### 석면폐증

사망한 사람이 다음 **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**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,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

- 1.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인 경우
- 2. 진료·진단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**석면폐증의 병명이 진행형 또는 조기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고도장애인 경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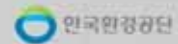
## IV. 특별유족인정기준 및 구비서류



### ※ 구비서류

- 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
- ②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사진(CD파일)
  -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: 석면폐종의 병형(진행형 또는 조기형) 확인 또는 석면이 원인이 된 흉막반 유무 확인
- ③ 폐기능장애검사서(폐용적 그래프 포함)
  - 폐기능 장애단계(고도장애) 확인

## V. 구제급여 지급신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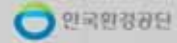
### 1. 2011년도 구제급여 지급액

- 2011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: **906,830원**
- 2011년도 구제급여 지급액

피해인정결별		요양생활수당	장의비 및 특별장의비	특별유족조위금
원발성 악성종피종		906,830원		30,877,500원
원발성 폐암				
석면 폐종	1급	652,910원	2,058,500원	15,438,750원
	2급	435,270원		10,292,500원
	3급	217,630원		5,146,250원



## V. 구제급여 지급신청



### 2. 구제급여 지급신청

#### 신청대상자

-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유족

#### 구제급여 종류

- ① 요양급여
- ② 요양생활수당
- ③ 장의비
- ④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
- ⑤ 구제급여조정금

## V. 구제급여 지급신청



### 3. 구제급여 종류별 구비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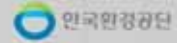
#### 요양급여

- ① 요양급여 지급신청서[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]
- ②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- ③ 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
- ④ 대리인 신청 시  
-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의 인감증명서, 위임장

#### 요양생활수당

- ①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[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]
- ② 대리인 신청 시  
-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의 인감증명서, 위임장

## V. 구제급여 지급신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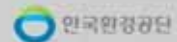
### 장의비

- ① 장의비 지급신청서[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]
- ② 사망진단서 : 석면질환으로 사망하였음을 확인
- ③ 신청인(유족)의 가족관계증명서 : 우선순위 유족 확인
- ④ 사실혼 관계 배우자 : 사실혼관계 확정판정 및 증명서 등
- ⑤ 장례비용 영수증 : 장례식장 사용영수증, 장례용품 구입영수증 등
- ⑥ 대리인 신청 시  
-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의 인감증명서, 위임장

###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

-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[ 별지 제13호서식]
- ② 한국환경공단 특별유족인정서류
- ③ 대리인 신청 시 :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의 인감증명서, 위임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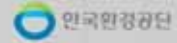
## V. 구제급여 지급신청



### 구제급여조정금

- ①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[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]
- ② 사망진단서 : 석면질환으로 사망하였음을 확인
- ③ 신청인(유족)의 가족관계증명서 : 우선순위 유족 확인
- ④ 신청인(유족)의 주민등록표등본 : 사망 당시 생계여부 확인
- ⑤ 사실혼 관계 배우자 : 사실혼관계 확정판정 및 증명서 등
- ⑥ 대리인 신청 시  
-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의 인감증명서, 위임장

## V. 구제급여 지급신청



### ※ 미지급 요양급여 등

- ① **미지급 요양급여 등 지급신청서**[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]
- ② **사망진단서** : 석면질환으로 사망하였음을 확인
- ③ **미지급 요양급여 등 증빙서류**
  -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  - 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
- ④ **신청인(유족)의 가족관계증명서** : 우선순위 유족 확인
- ⑤ **신청인(유족)의 주민등록표등본** : 사망 당시 생계여부 확인
- ⑥ **사실혼 관계 배우자** : 사실혼관계 확정판정 및 증명서 등
- ⑦ **대리인 신청 시**
  -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의 인감증명서, 위임장

## V. 구제급여 지급신청



### 4. 처리기간

- **지급여부 결정** :  
**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**  
※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 연장 가능
- **급여지급** :  
**지급결정 한 날부터 30일 이내**

**감사합니다.**

**석면피해구제센터**

- 홈페이지 :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(<http://www.env-relief.or.kr>)

